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96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5.

발 의 자 : 김승원 · 임호선 · 조계원
최혁진 · 이성윤 · 김원이
박해철 · 권칠승 · 박수현
신장식 · 박선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장, 군수,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,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재난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4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 후단 중 “있다”를 “있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0조(대피명령) ① 시장·군수 ·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·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.	제40조(대피명령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있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